

자. 손해배상(건)¹⁶⁰⁾

❑ 손해배상(건)(중첩 부분과 비중첩 부분이 있는 경우)

1. 원고에게,

- (1) 피고 ○○건설 주식회사, 피고 ○○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73,264,309원, 피고 ○○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75,258,3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. 12. 4.부터 2015. 4. 28.까지는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- (2) 피고 ○○공제조합은 207,854,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12. 4.부터 2015. 4. 28.까지는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
- 각 지급하라.

[참조판례]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경우,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,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.(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5다218785 판결)

❑ 손해배상(건)(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)

1. 원고에게, 1) 피고 A건설 주식회사, B건설 주식회사, ○○공제조합은 연대하여 306,849,724원, 2) 피고 A건설 주식회사, B건설 주식회사, C건설 주식회사, ○○공제조합은 연대하여 255,454,86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○○. 2. 14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참조판례]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,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.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,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.(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8다290672 판결)

160) 손해배상(건)으로 표시할 사건 : 건설·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(재판예규 제1775호)